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1898      |
| 의 퇴 인 | 서삼석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7. 24. |
| 추계번호  | 24B2100      |

#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4조의2제2·3항 신설(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및 안전조치 등) |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<u>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</u> 를 하여야 함(제2항) | 의무규정 |
| 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|  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4조의2제2·3항 신설(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및 안전조치 등)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미대상:<br>-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|

### 2. 상세 사유

#### □ 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(안 제44조의2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항지 내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**(설치대상 시설)** 여객선 부잔교 설치, 선착장 연장, 경사물양장<sup>1)</sup> 신축 등

1) 물양장(物揚場): 「명사」 『교통』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. 주로 어선이나 부선 따위가 접안해 하역한다.(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

- (시설개선 대상 기항지 수)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, 단기 시설개선이 필요한 기항지<sup>2)</sup> 수는 112개소로 파악
  - (국가 관리) 무역항 3개소, 연안항 4개소, 어항 14개소
  - (지자체 관리) 무역항 3개소, 연안항 5개소, 지방어항 15개소, 어촌정주어항 16개소, 소규모포구 52개소

□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기항지 내 접안시설별로 차량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·시설물의 유형 및 길이, 설치비용<sup>3)</sup>이 상이하고, 필요한 안전조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2) 우리나라 여객선 기항지는 총 328개소로 상세현황은 [참고자료] 여객선 기항지 현황 참고  
 3) 해양수산부에 따르면, 예를 들어, 경사물양장 보강시 노면 파손 규모에 따라 5~20억원으로 비용 편차가 크며, 경사물양장 확장시 30미터 연장에 약 10억원이 소요되나 확장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함

<기항지 개선 필요지역 등>

(2023.3. 기준, 단위: 개소)

| 유형         | 개선 대상 기항지 수 |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사물양장 신축   | 14          | • 물양장 설치 시 규모에 따라 10~40억원 소요                     |
| 부잔교 설치     | 15          | • 100m 부잔교 설치 시 약 5.5억원 소요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사물양장 확장   | 31          | • 30m 연장 시 10억원 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사물양장 보강   | 33          | • 경사물양장 노면 파손에 따른 보강<br>* 보강규모에 따라 다르나 5~20억원 소요 |
| 차량 주차구역 신설 | 6           | • 선착장 내 별도 차량주차 구역이 없는 경우 신설 필요                  |
| 방파제 공사     | 2           | • 방파제 파손에 따라 보수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그 외 소요     | 11          | • 접안시설 조명, 여객승선로 확보, 여객승선 비막이 지붕 등 설치 필요         |
| 합계         | 112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이주호 | 이유미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이주호 | 02-6788-3746 | progress@nabo.go.kr |

## [참고자료] 여객선 기항지 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- (기항지 현황) 여객선 기항지는 총 328개소로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 구역에 35개소,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 구역에 128개소, 그 외 소규모 항포구\*에 165개소가 위치

\* 소규모 항포구는 「항만법」, 「어촌·어항법」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항포구

- 기항지 위치에 따라 소관법령·관리주체·예산지원 방식이 다르고, 이에 속한 여객선 접안시설(이하 선착장) 관리 방식도 상이

### < 기항지 접안시설 관리 현황 >

| 합계      |    | 항만(35개소)        |     | 어 항(128개소) |        |      | 소규모<br>항포구  |
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|    | 무역항             | 연안항 | 국가         | 지방     | 어촌정주 |             |
| 328개소   |    | 16              | 19  | 34         | 42     | 52   | 165         |
| 관리주체    | 국가 | 11              | 10  | 34         | -      | -    | -           |
|         | 지방 | 5               | 9   | -          | 42     | 52   | 165         |
| 예산지원 방식 |    | 국비 100%<br>(교특) |     |            | 시·군·구* |      | 시·군·구*<br>- |

- (관리주체별) 항만 및 어항은 ‘국가관리’ 및 ‘지방관리’로 구분하여 관리
- 국가관리 항만 내 위치한 기항지는 항만 기본계획에 따른 ‘항만개발 및 관리(교특)’사업으로 국가 직접 관리(국비 100%)
  - 지방관리 항만 내 위치한 기항지는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 지원 종료
  - 국가어항 내 기항지는 어촌·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‘국가어항(농특)’사업(국비 100%), ‘국가어항관리(농특)’사업으로 정비·유지·보수 중
  -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·어촌정주어항은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 지원 종료
  - 항만·어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항포구는 시·군·구 소관이나, ‘어촌신활력증진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곳에 접안시설 개선 지원